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97

제안연월일 : 2022년 2월 14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Ⅰ. 수정이유

○ 동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전체적인 조례안 양식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양식에 맞게 제출되었으나, 제명의 경우 일부개정조례안의 양식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중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.

Ⅱ. 주요내용

가. 안 제명을 「제명 “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」에서 「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(안 제명).

Ⅲ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을 「제명 “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」에서 「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명 “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	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미래기술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부설한다.

1.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[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(하계동)]
2. 서울공업고등학교[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(대방동)]
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2.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5.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,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센터의 장 등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과 부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으로, 부센터장은 교감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,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,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.

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운영)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, 학년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다.

1. 센터의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

2. 학생 교육 계획

3. 교원 연수 계획

4. 센터에 필요한 시설·설비의 확충 및 정비

5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센터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 지원) 교육감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의 운영비
2.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
3.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
4.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비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